

증빙서류 목록	청소년직 5급
	양 정 선

구 분	증 빙 서 류	비 고
1	학위증명서(1)-학사졸업	
2	학위증명서(2)-석사수료	
3	학위증명서(3)-학점인정증명서(문학사)	
4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
5	자격증-청소년지도사2급	

문서확인번호 □ XD8B-6046-0037-A10A 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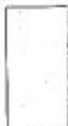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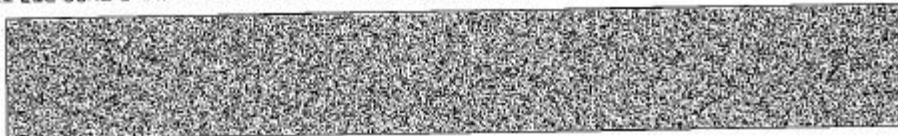
제 I - 6468 호

졸업증명서

성명 : 양정선
 생년월일 :
 대학 : 공과대학
 학부(과) : 공학부
 전공 : 건축공학
 졸업년월일 : 2001. 2. 13
 학위등록번호 : 대2000(학)1046호
 학위명 : 공학사(건축공학)

위의 사실을 증명함.

2019 년 4 월 19 일

 대학교 교무처
*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와 본 대학교 학인원생은 홈페이지(<http://www.vsbainnon.com>)에서 복본대조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문서확인번호 ■ XD04-AF63-9CF1-8B54 ■

증 제 19-10038466 호

수료증명서

성 명 : 양정선
 생 년 월 일 :
 대학원, 학부 및 학과 : 대학원, 건축학과 건축학전공
 과 정 : 석사학위과정
 입 학 연 월 일 : 2004. 3. 1.
 수 학 기 간 : 2004. 3. 1. ~ 2006. 2. 27

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19년 4월 19일

 대 학 교 교 무 처

(0376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(Tel. 02-3277-3233 / Fax. 02-3277-2096)

*본 증명서는 영단봉으로 발급한 증명서로서, 이화여대 재 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문서발급을 통해 원본대조가 가능(발급 후 90일간) *재출발은 발급일인 다음날 권장.



학위증명서(3)-학점인정증명서(문학사)

문서확인번호 [XD4E-F532-CF18-3C19]

제 2019-0143013 호

학 점 인 정 증 명 서

성 명	양정선	주민등록번호 (학번)	[REDACTED]-***** (2018-0077025)
전 공	청소년학 전공	학 위 종 류	문학사

학 점 원	전공필수	전공선택	교양	일반선택	계
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	24	9	3	18	54
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	0	0	0	0	0
독학학위제 시험합격	0	0	0	0	0
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	0	0	0	0	0
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	0	0	0	0	0
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	0	0	0	0	0
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특수 교육 이수	0	0	0	0	0
합 계	24	9	3	18	5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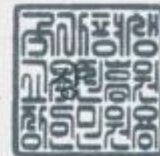
인정 학점 총계

54 학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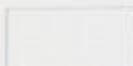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인정학점을 위와 같이 증명함.

2019년 4월 8일

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



*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입니다.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생원행지 홈페이지 (www.cb.or.kr)에서 원본대조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

1 / 1

발급번호 : G201905310113723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확인청구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양정선	

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

No	가입자구분	사업장명칭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
1	직장가입자	마포청소년문화의집	2015.11.23	
2	직장가입자	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	2010.11.10	2015.11.21
3	직장가입자	인천광역시부평구청	2006.10.13	2010.01.01

2019.05.31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※ 이 확인서의 취득일·상실일은 실제의 사업장 입사일·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.
(공인인증서 필요)

※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(재직증명용, 경력증명용, 대출용 등)로 사용시 공단에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제 2018-2-811 호

청소년지도사 자격증

성 명 : 양정선

생년월일 :

자격등급 : 2급

자격취득일 : 2018년 3월 31일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지도사
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2018년 3월 31일

여성가족부장관

